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 11. 27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9.30.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1.10.4.

다. 상정일자 :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1.10.12)

상정, 심사, 보류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12.11. 27)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구 본 수 교육지원과장

### 가. 제안이유

마포구의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1) 목적 (안 제1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설립 (안 제4조)

-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함

3) 사업 (안 제5조)

-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 사업을 함

4) 재산의 조성(안 제9조)

- 재단 설립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운영 재원은 구의 재정출연금, 기부금품 등의 수입금, 기본재산 운용 이자 수익금으로 함

5) 정관(안 제10조)

- 재단의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정관 변경 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6) 임원 및 이사회, 사무국 구성(안 제11조 ~ 14조)

- 임원 및 이사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감사는 2명으로 함
-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함
- 이사회에는 선임직과 당연직이사를 둠
- 재단의 사업수행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둠

7) 행정지원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안 제16조 ~ 제17조)

- 재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파견 또는 재단업무의 일부 겸임할 수 있도록 함
-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료를 감면 받도록 함

8) 재정지원(안 제18조)

- 재단의 설립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9) 지도감독(안 제19조)

-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시 보고 또는 확인, 검사 할 수 있도록 함.
- 재단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10) 재단에 대한 제재(안 제20조)

- 재단의 운영이 조례나 정관 등의 규정을 위반했을 시 출연금 중지 또는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면학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재를 발굴,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마포구 장학재단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임.

0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등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고,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며, 마포구에서는 장학사업이 지역의 교육발전 및 미래핵심 인재육성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기금 규모를 확대하여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0 안 제2조의 제목“(용어의 정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정의)”로 수정을 요함. 같은 조에서“재정출연금”이란 마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마포구의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와 안 제2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출연금과 의미가 같은 내용이므로 용어를 통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안 제3조에서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나“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 체계상“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로,“「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각각 수정을 요함.

0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기능에 재능있는 학생의 발굴 및 육성, 지원하는 사업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업 중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정관으로 목적사업을 정하여 실시하게 됨.

안 제6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장학생의 세부적인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음. 공익법인법 제3조제1항에서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관에 기재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학생의 세부적인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마포구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됨.

또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 학생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선발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제 3호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은 “예·체능 분야 국가 공인 대회에서 입상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으로 하였으나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대회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안 제6조제1항 본문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마포구에 주소  
소를 두거나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 규정하였음. 현행 [서울특별시 마  
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마포구에 주소(단, 지역인재육성 장학생은 예외로 한다)를 두고 장학금 신  
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  
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현행 기준보다 대폭 확대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규정하였음.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흥익대학교(학생수:1만7천여명)와 서강  
대학교(학생수:8천3백여명) 학생, 그 밖에 마포구에 거주하지 않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확대할 경우 과다한 마포구  
예산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도 마포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 상대적으로 불  
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

0 공익법인법 제11조제2항을 보면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함.

안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구의 재정출연금,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품, 그 밖의 수입금은 기본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재단의  
재산” 은 “재단의 기본재산” 으로 수정을 요함. 같은 조 제2항에서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구의 재정출연금과 재단의 사  
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시행  
령 제16조제1항에서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0 안 제10조제1항제4호에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제3조제1항제6호에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요함.

0 안 제11조제1항에서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였음.

장학재단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독립된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3조 등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이나 하부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고, 장학재단의 의사결정은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출연목적에 맞게 장학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단에 대한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 과반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여 선임·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0 안 제11조제2항 중 “이사장과 이사는 구 공무원,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에서 “구 공무원, 인재육성 등”은 불필요한 용어로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이사장은 이사 중

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을 요하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규정하였으나 안 제10조제1항제4호를 수정할 경우 안 제6항은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를 요함. 같은 조 제5항에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제5조제3항에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단서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5항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안 제12조제3항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에서 “의장이 되어” 는 “의장이 되며,” 로, 같은 조 제5항에서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는 공익법인법 제9조에서 “이사회 의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은 “이사회 의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수정을 요함.

0 안 제14조 본문에서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고 규정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제12조에서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업연도” 는 “회계연도” 로 하고, 구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연도가 동일하므로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 는 “구 회계연도” 로 각각 수정을 요함.

0 안 제15조제1항에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공익법인법 제12조제2항에서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

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공익법인이 공익법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로 수정을 요함.

0 공익법인법 제13조제1항에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으나 실체는 장학재단 허가권자인 해당 교육청에서 정관 제정시 환수재산을 해당 교육청으로 귀속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학재단이 해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향후 재단의 해산 및 법적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본 조례안에 재단 해산시 남은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